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74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서미화・이수진・허성무

김영배 · 정진욱 · 윤종군

김영환 · 전현희 · 권칠승

조계원 · 김 윤 · 강선우

소병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 비공개 전환이 가능함.

지난 1월 9일 일부 인권위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하고, 위원장의 졸속 결재로 1월 13일 전원위에 공식안건으로 제출되었음. 하지만 위원장과 일부 위원의 명분 없는 결정으로 비공개 안건으로 전환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동조 세력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음.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전원위에 제출된 23개의 안건 중 60%에 달하는 14개의 안건이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밀실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사는 공개한다. <u>다만, 위원회,</u>	의사는 공개한다. 다음 각 호에
<u>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u>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써 공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u>아니할 수 있다.</u>	
<u><신 설></u>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의
	<u>경우</u>
<u> <신 설></u>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회
	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위원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